

재난안전관리과

위원회별	소관부서	감사항목	시정 및 조치 요구 건수	처 리 결 과			비 고
				계	완결(계속추진)	추진중	
산업건설위원회	재난안전관리과	6	1	1	1		

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(재난안전관리과)

연번	감사항목	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	처 리 결 과	완결여부	비고
14	120기동대근무자 사기진작	<p>○ 120 기동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다른 부서와 달리 개인적인 시간도 뺏기고 고생이 많은데 수당을 별도 예산에 편성하여 근무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,</p> <p>○ 장의물품 대여 대상자는 기초 수급자 등으로 일정기준을 하여 일반 사업자의 영업범위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.</p>	<p>○ 재난안전관리과에 근무하는 일반직 근무자에게는 월 40시간 정도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, 120기동대 업무를 담당하는 전기적 2명에게는 55~60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다른 직원에 비하여 15~20시간의 수당을 더 지급하고 있음. 별도 수당을 책정할 근거가 없고, 타 부서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하여 별도 수당 편성이 곤란하여 과장 및 담당주사 등 간부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추가 지급분을 보전하고 있음.</p> <p>○ 2006. 1. 1부터 상가 장의물품 대여 대상 범위 및 대여 기간을 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. - 대여대상자 : 기초생활수급자 - 대여기간 : 2박3일</p>	<p>완결</p> <p>완결</p>	